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

본 계약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투자자문계약권유문서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님의게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의 결과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은 고객님의게 귀속되므로 투자자문계약 체결 이전에 본 서면자료에 나타난 계약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핵심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본 권유문서와 함께 첨부된 투자자문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넥스트투자자문 주식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정하는 서면자료를 교부받았으며,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 / 인)

보넥스트투자자문 주식회사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1) 투자자문의 내용

회사는 산업의 분석 및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판단을 바탕으로 고객의 투자자문자산의 내용과 규모, 투자방침과 투자환경의 변화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자문을 수행합니다.

2) 투자자문의 대상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증권으로서 상장주식 및 채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ELS)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으로서 유가증권 지수 선물 및 옵션
- ③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자문 대상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3)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은 투자자문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① 장, 단기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 ②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자문
- ③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
- ④ 국내외 경제동향,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간행물 제공
- ⑤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요청 자료 제공

4) 투자자문의 제공방법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에 서면, 유선, 전자방식(홈페이지, 전용어플리케이션 등)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서비스를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유선, 이메일, 전자방식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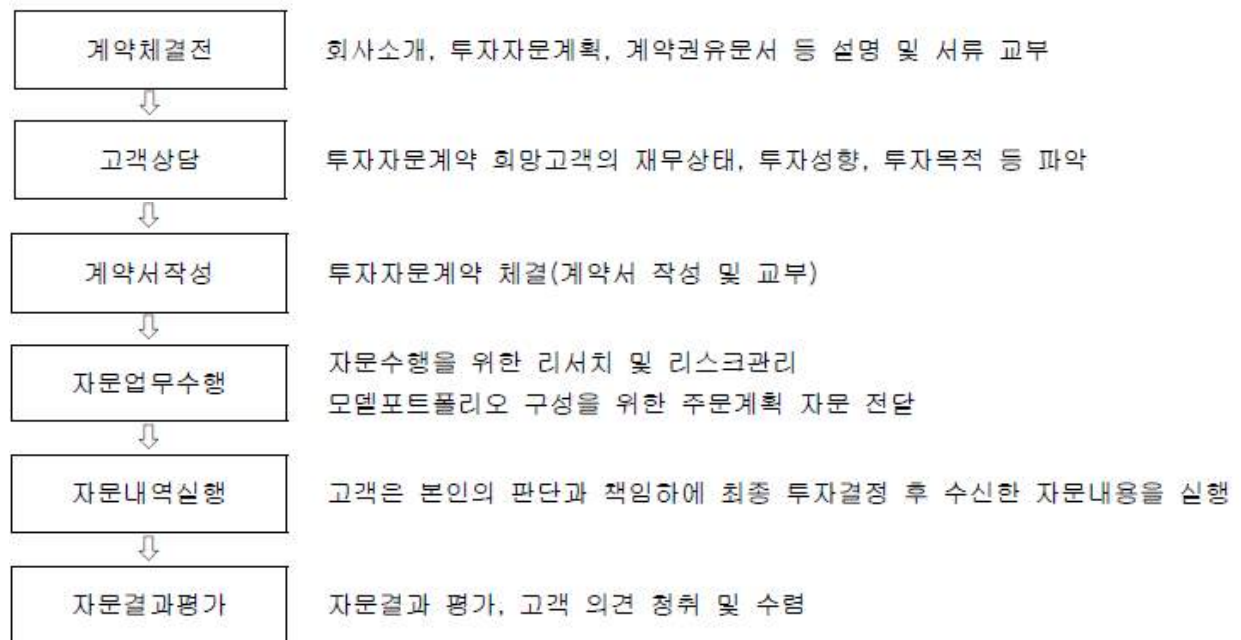
5)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절차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합니다.
- ②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합니다.

- ③ 회사가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자문을 고객에게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회사의 고객이 아닌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여 그 규정을 준수합니다.

2. 투자자문업무의 절차 및 지침

1) 투자자문업무 절차



2) 투자자문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가 정하고 있는 지침

회사는 철저한 조사 분석과 적절한 위험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객 수익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기본지침

자문업무의 객관성과 적합성을 위해 자문업무 수행에 관한 회사의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투자자문 자산에 대한 성실한 자문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준수
- * 전문적인 조사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자문
- * 고객의 자산상태 및 투자경험, 투자목적과 위험수용정도 등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위험관리

*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 투자자문, 리서치, 경영관리 등 내부 조직, 인원간의 원활한 협력

② 고객중심의 투자자문업무 수행 절차

회사는 다양한 투자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운용전략 수립, 모델포트폴리오 및 상품 편입비 결정, 종목 선정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용전략회의를 운영합니다.

③ 자문업무 진행

고객과의 자문 업무 진행 시 고객의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명하게 업무를 진행합니다.

3)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 경험, 투자대상자산,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 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으면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자문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자문사 회사의 임직원은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투자자문 서비스에 관하여 투자자문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자문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4) 적합성 원칙 관련 사항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른 일반 투자자로 확인될 경우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1호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일반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 상황,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일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5) 적정성 원칙 관련 사항

① 회사는 고객에게 적정성의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 재산 상황, 취득 및 처분 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의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 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적정성의 판단 기준은 금소법 제10조 및 제11조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2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6) 설명의 의무

- ① 회사는 일반 투자자에 계약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 측면과 투자자의 투자 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 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 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회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⑥ 회사의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7) 광고 관련 준수사항

- ① 회사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
 - i) 투자에 따른 위험
 - ii)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할 때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 ② 회사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1.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3.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등과 비교하는 행위
 4.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문담당자에 관한 사항

- ① 고객의 투자자문을 담당할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의 학력 및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투자자문담당자는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성명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자격
나현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부전공 회계학) 現 보넥스트투자자문(주)자문역(2025.09.09.~) 前 IM증권 (구 하이투자증권) PB 前 메타투자자문 투자자문역 이사 前 미래에셋증권 (구 대우증권) PB	일반운용전문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자격
장석우	現 보넥스트투자자문(주) 투자자문역 과장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4. 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 1)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문담당자를 선임합니다.
- 2)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4)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5)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6)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7)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주주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 주주 현황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양 근 미	70,000주	83.3%	최대주주
유 성 엽	14,000주	16.7%	

2)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대표이사	박 경 목	現 보넥스트투자자문(주) 대표이사(2025.09.09.~)
감 사	서 문 석	現 보넥스트투자자문(주) 감사(2024.07~) 前 미래에셋증권 (구 대우증권) 이사

※ 위 임원 및 대주주는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 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투자자문계약의 변경 및 해지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문계약서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비밀유지의무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 내용 및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3) 투자자문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②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③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⑤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⑥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재산을 통상의 거래조건과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7. 고객의 의무 및 책임

1) 통지의무

- ①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투자자문계약서 <별지1>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또는 유선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합니다.

2) 비밀유지의무

고객은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3) 투자자문재산의 자문 결과에 대한 책임

회사가 투자자문재산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문재산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문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 2) 회사와 고객이 투자자문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자산형태는 현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과 회사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은 공정한 시세가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 3) 투자자문수수료는 투자자문재산 계약금액에 제4)항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는 투자자문재산의 규모, 성격 및 자문방법에 따라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 이와 다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자문 기본수수료율 기준표 및 세부기준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부가세 포함)	납부시기 및 방법
기본수수료	성과형 5,000,000 원 종합형 8,000,000 원 답클래스 12,000,000 원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 ① 자문계약기간은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년간으로 하며, 투자자문 계약자산의 최소 가입금액 예치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 다만, 계약기간 내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존 계약 만료일의 익일부터 1년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 ② 계약기간 만기 전에 해지를 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중 투자자문자산을 증액 감액하는 경우 수수료 계산은 다음의 방식에 의거한다.
 -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증액금액에 대하여 기본수수료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 계약중도해지, 감액의 경우
: 선취수수료를 징수한 건에 한하여 투자자문계약서 상의 세부자문 계약조건에 따라 회사는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 5) 성과수수료¹⁾는 성과형의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로 투자자문계약서의 성과보수계약조건 자문재산 연 수익금의 10% 해당 수수료를 사전에 정한 기준일(수익률 기준일, 계약만기일, 중도해지일)을 기준으로 초과성과에 대한 요율 수수료를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합니다.
- 6)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계약 잔여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9.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고객과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합니다.
- 2) 회사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철회

- 1)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재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 ② 고객이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
- 3)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투자자문계약서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4) 금융소비자가 회사가 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체결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의 해지를 서면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이하 “위법계약 해지권”),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
 - 2. 계약 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3. 금융소비자가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을 것
 4.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 사실이 기재된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였을 것
- 5)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계약 해지권이 행사된 계약의 해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위반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회사가 본조 제3항의 기한 내에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
 5. 금융소비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6) 회사는 위법계약 해지권이 행사된 경우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한에 따릅니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통지 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사실 확인 또는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7) 회사가 본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8) 본조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회사는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9)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은 본조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권의 행사 및 거절과 관련한 각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이를 위하여 다른 부서에 사실확인 또는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자문플랫폼 이용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자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회사와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문플랫폼을 통해 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자문플랫폼 서비스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① 회사의 온라인 계약지원
- ② 투자자문과 관련된 고객 정보의 보관 및 관리
- ③ 투자자문내역에 따른 주문·체결 내역의 전달·집행 등의 업무와 기록 보관
- ④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수수료 및 성과보수의 계산 및 수취업무의 대행
- ⑤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 및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 ⑥ 그 밖의 투자자문업무에 부수된 업무

12. 민원 및 분쟁조정 절차

1) 민원 접수

고객이 회사의 대표전화로 민원사항의 처리를 신청합니다.

고객이 회사의 분쟁처리조직에 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회사는 해당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2) 사실조사

회사는 내부적으로 업무 담당부서에 관련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에 문의합니다.

3) 처리결과 통지

회사는 사실조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보하며, 고객이 회사의 처리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분쟁처리 절차는 종료됩니다.

4) 고객의 이의제기

고객이 회사의 처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분쟁처리조직에서 조정 또는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참여

회사는 고객의 이의제기에 따라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참여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양방이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결과에 대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분쟁 처리하게 됩니다.

[첨부] 투자자문사 소개

[첨부] 투자자문사 소개

회 사 명	보넥스트투자자문(주)	대표이사	박 경 목	
설 립 일	2024. 7. 30.	자 본 금	4.2억원(2026. 01. 17. 기준)	
전화번호	1600-2078	FAX	02-785-2078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105호 (여의도동, 신송빌딩)			
E-mail	vonextinv@gmail.com			
주요주주 현 황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양근미	70,000주	83.3%	최대주주
	유성엽	14,000주	16.7%	
	합 계	84,000주	100%	-
회사임원 현 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대표이사	박경목	現 보넥스트투자자문 대표이사	
	감 사	서문석	現 보넥스트투자자문 감사 前 미래에셋증권 (구 대우증권) 이사	
독립투자자문 여 부	비 독립투자 자문업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수취 여부	해당사항 없음	
다른 금융업 겸 영 여 부	해당사항 없음	임직원의 겸직 및 타 금융기관과의 임직원 파견 여부	해당사항 없음	
계 열 금융기관	-	제휴금융기관	-	

* 위 임원 및 대주주는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